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1호 2008년 3월 pp.95~123
한국세무학회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희열** · 김태용*** · 정규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작물재배 농업인의 유통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은 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하는 방안, ③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 ④ 국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 ⑤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소비자 직판에 관심이 있는 122명의 농민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등록의 주된 동기는 소비자 직거래시 신용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과 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함이다. 둘째, 사업자등록 방안은 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셋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세무신고의 어려움을 들었다. 넷째,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과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으로 다음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받고 계산서 발행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국세가 아닌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관리할 명분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세로 일원화하고 과세체계와 일치하게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관리를 세무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할 때는 일정 수준의 매출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농업소득세의 국세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경우 단기적으로는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농협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이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농업인 사업자등록, 농업소득세, 작물재배업, 적격증빙, 농가등록제

* 본 논문은 농림부에서 발주하여 저자들이 작성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발취·수정한 것임.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suhhy810@hanmail.net, 031-280-3810, 제1저자

*** 미래회계법인 공인회계사, loveagro@hanmail.net, 031-236-0015, 공동저자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jungkyu@korea.ac.kr, 011-9193-1121, 교신저자

I. 서 론

1. 연구목적

FTA 확대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고, 농가소득의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낮은 생산단가에 기초하여 대량으로 수입되는 저가의 외국 농산물에 대하여 우리나라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고품질의 브랜드화 전략이다. 브랜드화 전략은 유기농, 무농약 또는 저농약의 친환경 농산물 또는 고품질을 통하여 추구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도 중국정부의 지원과 노력에 힘입어 농산물 상표등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WTO에 가입한 이후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산물의 브랜드화, 고급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KOTRA global window, 2004.6.2).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부총리가 “FTA로 소득이 높아지면 국산 브랜드 농산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라고 예측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연합뉴스 2006.3.7).

고품질 브랜드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판매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유기농 무농약의 친환경 농산품은 구별이 쉽지 않아 소비자와의 신뢰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직접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하여 신뢰를 형성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¹⁾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재배작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인의 작물재배에 따른 농업소득은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농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소득은 국세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발행·관리가 국세의 담당기관인 국세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업사업자는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인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없다. 농업인이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판매에 큰 제약을 안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사이버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다. 농업인은 작물재배업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 판매에도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일부 농업인은 생산한 작물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따라 소득세 과세문제, 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의 불이익 문제 등 불합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1) 본 논문에서의 농업인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 농업인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은 어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성립된다.

본 연구에서는 작물재배 농업인의 유통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하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농업인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가능한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김태용(2004),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2004), 서희열·정규언(2005)의 연구에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태용(2004)의 연구에서는 5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에 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불비과산세 부과 규정이 신설된 이후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에 대하여 매입처에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무협력의무만 부과하고 일정금액이상의 매출일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농업인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2004)에서는 현행의 농업인 사업자등록 의무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득세법 제168조 개정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 및 농가부업규모의 소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사업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희열·정규언(2005)에서는 농업분야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중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소득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경우에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작물재배업 업종 코드를 신설하여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업인이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농작물의 판매시 계산서 교부 의무와 계산서의 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세무협력의무만을 부과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②에서는 매출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판매가격 부분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일반적인 판매가격 초과분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일정규모 이하의 매출에 대해서는 전액을 농업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본인의 생산한 농작물 판매라고 보기 어려운 일정규모 초과분의 매출에 대해서는 초과분 전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자등록방안을 추가로 제시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업자등록방안과 함께 각 방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농업인에 대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업인의 여론을 수렴하였고, 이들을 종합하여 사업자등록방안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농업인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본 단원에서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에 관한 관련 세법의 현황과 작물재배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1. 현재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의무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표 1>과 같다.²⁾

<표 1> 개인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의무, 소득세·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구 분	사업자등록 의무	소득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작물재배소득만 있는 경우	없음	없음	없음
일정 두수 이하의 축산 부업 농업인			
“부업축산규모 초과+기타부업소득”으로 연 1,200만원 이하 농업인			
부업축산규모 초과소득과 기타부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하는 농업인-면세 재화를 생산	있음 (소득세법)	있음	없음
부업축산규모 초과소득과 기타부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하는 농업인-과세 재화를 생산	있음 (부가가치세법)	있음	있음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의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규모 불문	있음 (부가가치세법)	1200만원초과만 있음	있음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판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여 원생산물 가격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농업인	있음 (소득세법)	있음	없음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제조장을 개설하여 가공 판매하여 원생산물 가격에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농업인	있음 (부가가치세법)	있음	있음

* 서희열·정규언(2006b)을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2) 보다 자세한 설명은 서희열·정규언(2006b)을 참조할 것.

2. 농업인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가. 통신판매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인터넷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조①, 동 시행령 13조①). 다만,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 없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농업인이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 영위시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조①, 동 시행규칙 7조①)(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 2004, p.6).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모든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입조건으로 “가맹점 가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중인 사업자”를 제시하고 있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작물재배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작물재배사업자도 일부는 필요에 의하여 도소매업 등으로 등록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업자는 가맹점 신청자가 사실상의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있다.

나.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적격증빙 요구

2000년 이후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사업자는 50,000원 이상의 경비를 지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에 의한 증빙을 갖추지 못할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부과하고 있다. 비록 농어민(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 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거래 내용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과의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 2004, p.7).

2000년 이후 농산물 유통시장이 공판장 중심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대형할인마트(이마트, 홈플러스, GS마트, 롯데마트 등), 백화점, 홈쇼핑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형판매장들은 생산농업인에게 직접적인 납품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때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식자재 회사, 외식업체와 농업인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자인 이들 거래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적격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다(김태용 2004).

다. 접대비 인정을 위한 적격증빙 요구

모든 내국법인과 모든 개인사업자가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법인세법 25조②, 소득세법 35조). 이에 따라 농민에게 5만원 이상되는 농산물을 접대용 물품으로 구입하는 것

은 손금불산입 된다(서면2팀-1843, 2006.09.20).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안된 농민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증빙 요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공급받은 면세재화 매입가액의 1/102(음식점업의 경우 6/106)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17조③).

농산물 등을 농민 이외의 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만,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농·어민의 성명·주민번호와 거래 건수·품명·수량·매입가액을 기록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2조③).

따라서 제조업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의 영수증을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부가 46015-2921, 1997.12.27, 서면3팀-1727, 2006.08.09).

음식점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구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면세재화 매입가액의 6/106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26조의3).

단,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해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 영위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이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공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발행가능한 증빙과 사업자등록이 안된 농민과 거래할 경우 구매자가 당하는 불이익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사업자의 유형과 발행가능 증빙 및 농민과 거래 시 불이익

판매자	발행가능 공식증빙	구매자의 이용가능 적격증빙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소매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면세사업자	계산서(소매는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등록이 안된 농민	없음	없음 불이익 : ① 5만원 접대비 손금불산입 ② 비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 불가 ③ 복식부기의무 간이과세 음식점자 의 의제매입세액 불가 ④ 공식증빙이 없음

마. 고용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필요성 증가

농업인 사업자등록의 세번째 필요성은 고용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의 필요성으로 인함이다. 농장의 규모화가 증대되면서 농업부문의 고용 인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외국산업연수생들을 고용하기 위하여서는 산재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고용인력에 대한 세원관리(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제도 하에서 사업자등록이 없이는 어렵다.

Ⅲ.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

1.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은 현행의 과세제도 틀에서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과, 현행의 과세제도 틀에서 작물재배업의 업종코드를 신설하여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 지방세 과세기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 그리고 농업소득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³⁾

3) 김태웅(2004),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2004) 및 서희열·정규언(2006b)에서는 현행 과세제도의 틀에서 업종코드를 신설하여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

현재 농업인의 실질에 맞게 작물재배업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작물재배업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부과대상이고 국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 작물재배업의 업종 코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물재배업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등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현행의 과세제도 틀에서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받는 방법은 도·소매업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 다수의 농업인이 카드가맹점 가입, 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있으나,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김태용 2004).

농민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서희열·정규언 2006b).

첫째, 농업인이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과세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자로 취급되어 농업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사다가 판매하는 도·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를 과세해야하고,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하나 그 구분이 쉽지 않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세 신고 시에 판매한 농작물이 직접 재배한 것이란 사실을 증명하고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

둘째, 농업인이 계산서 발행 등을 위하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있어 사업자로 부과되고, 농업인 지원 혜택이 배제되어 다시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농촌진흥청의 농한기 일감 갖기 사업으로 생산된 고공품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없이는 정상적인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판매하는 경우, 농가부업의 비과세 소득금액 한도인 연간 12,000,000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현행의 과세제도 틀에서 세법개정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하는 방안

농업소득세는 지방세이고,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엄격하게 따지자면 지방세법에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계산서 발행규정 등을 규정하고, 농업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면세재화이므로 농산물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또한 농업인은 농산물을 정부의 수매를 통하여 판매하거나 농협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통한 계산서 발행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했다.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체제를 갖추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이 아닌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통하여 농지 현황과 작물의 생산량 등을 관리하여 농업소득세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

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농업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없고, 계산서 발행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표 3> 참조). 농업인이 사업자로서 생산한 농작물의 직판을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려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식자재회사·외식업체·대형할인마트·백화점 등에 판매하더라도 구매자 측에서 요구하는 소득세법 상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농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원칙론적인 방안은 지방세법에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계산서 발행규정 등을 규정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을 받고 관리하는 방안이다.

<표 3> 사업자등록과 발행증빙

사업자의 분류	사업자등록 근거규정	발행증빙의 종류	증빙발행의 근거규정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5조	세금계산서, 영수증	부가가치세법 32조
면세사업자 - 법인	법인세법 111조	계산서, 영수증	법인세법 121조
면세사업자 - 개인	소득세법 168조	계산서, 영수증	소득세법 163조
법인 아닌 농민*	없음	없음	없음

* 법인 아닌 농민의 농업소득은 지방세 과세대상이므로 지방세법에서 사업자등록과 영수증 발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나 제도의 미비로 없음.

이 방안의 장점은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문제와 계산서 발행 문제를 현행의 과세체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원칙에 따라 과세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이 방안의 단점은 첫째,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행·관리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된다는 점이다. 농업소득을 제외한 모든 사업소득이 국세로 되어 있고 농업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계산서의 발행관리가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 관리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표 4> 참조).

둘째,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곳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받고 계산서 발행을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지방세법에 의해 발행된 계산서를 국세에서 인정하는 문제와 계산서의 상호검증을 위한 자료 교환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여기에 발생할 상당한 비용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2005년 1월 5일 이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농업소득세는 5년간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 관리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도 이 방안의 단점이 될 것이다.

〈표 4〉 작물재배업과 기타 사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비교

사업의 종류	사업자의 분류	소득에 대한 세목	관련 세법	과세관청
작물재배업	개인	농업소득세(지방세)	지방세법	시·군
	법인	법인세*(국세)	법인세법	국세청
작물재배업 외	개인	소득세(국세)	소득세법	국세청
	법인	법인세(국세)	법인세법	국세청

* 농업소득세를 과세한 후에 법인세 계산 시에 농업소득세 납부액을 세액공제 한다.

다.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

농업인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작물재배업 업종 코드를 신설하여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김태용 2004,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 2004, 서희열·정규언 2006b).

현실적으로 작물재배로 인한 농업소득을 제외한 모든 사업소득이 국세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등의 관리와 감독을 국세청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표 4> 참조). 농업소득의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현실과,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발행관리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할 경우에 발생하는 지방세법에 의해 발행된 계산서를 국세에서 인정하는 문제와 계산서의 상호검증을 위한 자료 교환 등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국세청에서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농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디 기관에선가는 해결해 주어야 한다. 비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국세로서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소득세법 19①1),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발행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행가능성이 더 높으며, 더 적은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농업인에게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사업자등록이 증가하게 되면, 농업인의 직접 판매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증가하여 농업인과 거래하는 식자재회사·외식업체·대형할인마트·백화점 등의 상대 거래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무자료 거래의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현행 방법과 비교하면, 농업인을 도·소매업자로 대우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농업인 대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과 비교하면,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제도의 이원화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최소한의 세법개정으로 실질에 맞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방안의 가장 큰 단점은 국세의 주무관청인 재경부와 국세청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의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재경부 소득세과 2006).

첫째, 국세부와 관련 없이 농업인의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관리를 위해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

둘째, 허위 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제재수단이 없다. 농업인의 경우 국세부과 대상자가 아니므로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불이익이 없다.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자(매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과세소득 계산시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다. 이러한 허위 계산서를 막는 기본적인 원리는 발행하는 자(매출자)의 소득세·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허위 계산서 등이 발행될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수질서가 훼손되어 국세행정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농민에게는 계산서합계표 제출도 강제할 수 없어 허위 발행여부 확인도 불가능하다.

셋째, 농산물유통업자 등이 조세포탈을 위해 농업인으로 위장 등록할 우려가 높다.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줄일 수 있다.

첫째, 인력 등 행정력 낭비 문제는 모든 농민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가맹이나 계산서 발행의 필요성을 느끼는 일부 농민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므로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허위 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문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이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도 부과함으로써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산품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농산물의 경우 생산품목과 경작면적 만 확인이 되면 생산가능량의 추정과 농산물의 시세를 통해 자체 생산을 통해 판매가능한 금액의 대략적인 추정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농업 관련인의 위장 등록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대략적인 추정치와 실제 신고하는 자체 생산매출액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생산품목과 경작면적의 확인은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시 농지원부 등을 통하여 경작면적·생산품목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세제를 변경하는 방안을 채택한다면 유통업자의 위장등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라. 국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

현행 과세제도의 틀에서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은 국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작물재배업 업종코드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해주려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은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행·관리가 세무서와 비장자치단체로 이원화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현재 지방세로 규정되어 있는 작물재배에 따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국세청에서 사업

자등락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즉, 지방세 과세대상인 작물재배에 따른 농업소득을 국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농업인의 과세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물론 국세로 전환 한 후에도 농업인의 실질적인 과세부담은 지방세로 있던 경우에 비하여 변동이 없도록 일정기간 비과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첫째, 넓은 의미의 사업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국세로 일원화 된다는 점이다. 둘째, 과세체계와 일치하게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관리가 세무서로 일원화 되어 일치된다는 점이다. 셋째, 비록 단기적으로는 비과세를 유지하여 세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세청과 재정부의 반대가 완화 될 것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넓은 의미의 사업소득 중 농업소득만 별도로 지방세로 규정되어 있어 비과세 등 예외규정을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국세로 통합될 경우 비과세 등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작물재배에 따른 농업소득을 국세의 과세관할로 전환한다면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분류과세 하는 것이 관리 목적상 편리할 것이다.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되고 있다. 그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국세인 소득세 중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고 있으며, 농업소득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농업소득이 국세로 전환된다면 <표 5>과 같이 소득세 중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의 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이 농업소득에 대한 별도관리를 쉽게 할 것이다.

〈표 5〉 농업소득의 국세 전환 시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사업소득의 종류	변경전	변경후 안
사업소득	국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국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부동산임대소득	국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국세-소득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농업소득	지방세-농업소득세	국세-소득세 (분류과세)

마.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

세제변경을 최소화 하고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의 가장 큰 단점은 국세의 주무관청인 재정부와 국세청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국세가 징수되지 않는 작물재배업에 사업자등록의 부여 및 관리를 위해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안이다. 농민은 농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농협이 농업인에게 할당된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농협이 농업인을 관리·지도하고 대리하는 자격으로 세무서에 일괄 신청하여 사업자번호를 받는 방법이다. 그리고 농민이 농협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농협에서 이를 집계하여 세무서에 일관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이다. 즉, 농협은 사업자등록을 한 농민에 대하여 지도·관리·감독을 하여 농업인에 대한 세무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농협에는 조세협력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인에 대한 세무가 농협의 조세협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사한 사례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들 수 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포대, 차광망 등의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농민이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에 농협조합 등의 환급대행기관을 통하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 2). 처음부터 영세율이나 면세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고 사후에 환급해주는 이유는 다음의 기자재가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세감면의 혜택이 농업인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환급대행자(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연연초생산업협동조합)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은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류를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농어민으로부터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환급대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한다(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9조).

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말한다(동 특례규정 13조).

농협을 통한 사업자등록의 장점은 농업인의 편리성이다. 농업인이 방문하기 어려워하는 세무서보다, 익숙하고 친근한 농협을 이용하는 경우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농협으로부터 친절한 세무지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방법의 단점은 첫째, 농협에 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농협이 농민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대행하고, 계산서발행을 지도하며,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농민으로부터 접수받고, 세무서에 전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계산서 발행 관리를 세무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 하게 되므로 계산서 발행 관리가 느슨해 질 수 있다.

농협에서 발생하는 농업인의 납세지도에 대한 관리비용을 해결하는 방안은 다음의 두가지가 있

다. 첫째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한 교부금’(국세기본법 84조, 동 시행령 65조의2)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납세지도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로는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규정되어 있다(납세지도에 대한 교부금지급규정 3조). 납세협력에 대한 교부금 지급의 또 다른 예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조합에 대한 납세조합교부금이다.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 내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221조①). 실제 납세조합교부금은 현재 월 징수납부세액의 3%에서 10%사이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국세청고시 제1999-45호 1999. 12. 28).

농협에서 발생하는 납세지도에 대한 관리비용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수익자인 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이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농협 등에서 대행하는 경우 농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5%에 해당하는 환급대행수수료를 징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하게 될 사업자등록·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대행과 계산서 발행 관리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방안이다.

계산서 발행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2④-⑦)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사업자등록·계산서합계표 제출 대행자의 통보의무와 가산세 제도를 통하여 통제해야 할 것이다.

대행자의 통보의무는 다음과 같이 신설하면 될 것이다.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대행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① 농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② 농민의 경작면적·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가등록제와 연계 방안

농가등록제는 2005년 12월에 농림부 주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회의」에서 도입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오내원 외 2006). 농가등록제는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서 고소득 겸업농 및 취미농 등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고, 농가 유형에 맞는 맞춤형 농정을 실천하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농민신문 2006.3.22). 농가등록제는 기초등록사항으로 영농종사자, 경작지규모, 재배작목, 사육두수 등을 등록하게 해서 직불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상세등록사항으로 경영실적, 영농교육실적, 정책수혜실적 등을 등록하게 해서 그 밖의 농림사업의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맞춤형 농정의 기초적인 추진시스템이 된다(김수석 외 2006).

농업인 사업자등록의 주된 필요성은 첫째는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적격증빙인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결제로 판매 하기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위함이며, 셋째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함이다. 농가등록제가 사업자등록이 가지는 이러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농가등록제가 사업자등록이 가지는 계산서 발행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과세당국에 의하여 관리·통제되지 않는 농가등록제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과세당국이 믿을 수 없고, 과세당국에 의하여 관리·통제되지 않는 계산서를 과세당국이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업인이 농가등록제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추진할 경우, 과세당국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업인이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하여 적격증빙의 자격을 부여해 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과세당국의 관리·통제 하에 있지 아니하는 농가등록제 농업인이 과세당국의 적격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재경부·국세청이 제기한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가능성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관리·통제 하에 있지 아니하는 농가등록제를 통하여 농업인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등록제를 통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①항과 동 법률 10조 ①항 및 동 시행규칙 7조 ①항을 개정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작물재배농업인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신 농가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농가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농가등록제를 통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판매를 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몰을 통한 판매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농가등록제가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대체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보완해 줄 가능성은 있다. 농가등록제를 통하여 개별 농업인의 경영관련 사항이 신뢰성 있게 측정되고 검증될 수 있다면,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이나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이 가지는 단점인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행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 농가등록제가 과세자료와 직·간접으로 연결된다면 농가등록 사항이 진실되지 않고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농민 관련 언론에서도 농가등록제 정보의 과세이용을 우려하는 기사가 게재된 바 있다(농민신문 2006.1.27, 2006.3.22). 농가등록제를 과세자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연관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장단점 분석은 농업인의 경영관련 사항에 대한 과대·과소보고의 동기와 검증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3. 농업인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담과 추가 고려사항

가. 농업인 사업자등록과 세무신고 부담

앞에서 제시한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관계없이, 농업인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시와 매년 소득세 신고 시에 실질적인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①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등록내용, 농지원부 등)
- ② 전년도 생산품목, 생산량, 판매금액
- ③ 외부 구매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금액

공산품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농산물의 경우 생산품목과 경작면적 만 확인이 되면 생산가능량의 추정과 농산물의 시세를 통해 자체 생산을 통해 판매가능한 금액의 대략적인 추정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대략적인 추정치와 실제 신고하는 자체 생산매출액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세무협력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첫째, 농작물의 판매 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163조①). 그러나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11조②).

둘째, 교부한 계산서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소득세법 163⑤, 동 시행령 212①).

셋째,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이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127조, 164조).

넷째,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은 익년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금액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며,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스스로 재배한 작물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

나. 국세 전환 시 작물재배소득의 비과세 규모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작물재배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작물재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해야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

작물재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모 산정에 참조할 수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다. 농가부업소득의 경우 가축별 두수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의 축산부업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표 6> 참조). 규정된 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하여 연간 1200만원 까지 비과세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9조).

<표 6>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업인의 축산부업규모

가축종류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마리	30	30	200	300	300	5,000	10,000	10,000

* 2종류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가축별로 각각 계산한다.

비과세의 규모를 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소득금액의 계산과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농업인들이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이 어려워 실제 적용에 있어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비과세 규모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수입금액(매출액)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객관적이며, 적용가능성도 높다(서희열·정규언 2005).

소득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부업소득의 비과세 규모를 수입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소득률을 적용해야 한다. 200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보면, 축산업의 경우 최고 96.6%(낙농·육우사육)에서 최저 85.3%(사슴사육)이다. 축산관련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은 91.5%, 임업 중 양묘 및 육림을 하는 영림업이 90.8%이다. 유사업종의 이러한 비율을 고려하여 작물재배업의 단순경비율을 약 90%(소득률 10%)로 가정하면, 소득금액 1,200만원의 수입금액 환산액은 1억200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은 <표 6>의 비과세 축산부업은 고려되지 아니한 수치이다. 따라서 작물재배업을 국세로 전환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더라도 최소한 수입금액(매출액) 1억2000만원 미만은 비과세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5년 1월 5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률 7332 부칙 5),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동 기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 농업인 사업자등록과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에게도 가산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수입금액 1억 2000만원 미만의 작물재배업을 비과세로 규정하면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인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업원이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아무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에서 3억원에 미달하는 간편장부의무자는 간편장부를 기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IV. 사업자등록제 관련 방안에 대한 농업인 의견 조사

1. 조사의 개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방안의 제안에 있어 직접 당사자인 농업인의 의견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어 농업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의 내용은 ‘농업인의 규모’, ‘현재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된 이유’, ‘소득세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을 해서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음으로 인한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을 할 계우에 예상되는 어려운 점’, ‘각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포털사이트인 www.affis.net 메인화면에서 행해진 온라인 설문조사와 농업관련 인터넷물 운영자 교육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협조를 위하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안내를 하였고, 아피스 회원 7만여명에게 설문을 메일로 송부하였으나,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매우 낮았다.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모두 108명이 응답하였으며, 오프라인 설문조사에는 모두 14명이 응답하여 총 122명의 응답이 회수되었다.

응답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응답하였으므로, 전체 농업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대표적인 표본이 아니라 재배작물의 소비자 직관의 경험과 관심이 많은 농업인들로 구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

가. 응답자의 특성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122명 응답자의 특성은 <표 7>부터 <표 9>과 같다.

〈표 7〉 응답자의 매출액 및 농장 고용직원 수의 분포

연간 매출액	응답자 수 (비율 %)	농장 고용직원 수	응답자 수 (비율 %)
5억원 이상	1(1)	10명 이상	1(1)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9(15)	5명 이상 10명 미만	7(6)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9(24)	1명 이상 5명 미만	34
5천만원 미만	68(56)	없음	75(28)
무응답	5(4)	무응답	5(4)
계	122(100)	계	122(100)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응답자는 연간 매출액 5억원 미만이었으며, 응답자의 56% (68/122)는 연간 매출액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 이었다.

응답자 중 61%(75/122)는 고용직원이 없이 혼자서 영농을 하고 있었으며, 28%(34/122)의 응답자는 1명 이상 5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표 8〉 응답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응답자 수	비율(%)
했음	41	34
안했음	81	66
계	122	100

응답자 중 34%(41/122)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66%(81/122)는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에 대한 질문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의 응답 분석

사업자등록을 한 4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이유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이유	응답자 수 (복수 응답)	응답자 41명에 대한 비율(%)	전체 응답에 대한 비율(%)
소비자 직거래시 신용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19	46	39
납품처가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20	49	41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6	14	12
외국인 연수생 및 직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0	0	0
기타	4	10	8
계	49	119	100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이유를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비자 직거래시 신용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에 응답한 비율은 41명 중 19명으로 46%이었으며, “납품처가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라고 응답한 비율은 41명 중 20명으로 49%였다. 설문지에는 기타로 응답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하여”라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비율은 41명 중 6명으로 14%였다. 그 외의 기타 사유로는 “소비자와 신뢰구축으로 소득 증대를 위해”, “대출시 필요 때문에”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다기에”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연수생 및 직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라는 지문에는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표 10〉 사업자등록 시 업태와 종목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	응답자 수	비율(%)
업태 : 도·소매, 종목 : 농산물	27	66
업태 : 소매, 종목 : 전자상거래	3	7
업태 : 제조, 종목 : 버섯재배	3	7
기타	8	20
계	41	100

응답자 중 66%(27/41)는 업태를 도·소매로, 종목은 농산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소매·전자상거래로 등록한 응답자와 제조·버섯재배로 등록한 응답자가 각각 7%(3/41)이었으며, 그 외 도소매·화훼, 도소매·쌀, 임업·장뇌삼, 임업·표고버섯, 임업·버섯재배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응답하였다(〈표 10〉 참조).

〈표 11〉 작물재배업의 판매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	응답자 수	비율(%)
알고 있음	29	71
몰랐음	12	29
계	41	100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벼, 과일, 버섯, 특용작물 등과 같은 작물재배업의 경우에 스스로 재배한 작물의 판매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1%(29/41)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29%(12/41)의 응답자는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표 11〉 참조).

〈표 12〉 종합소득세 납부 여부

종합소득세 납부 경험	응답자 수	비율(%)
납부경험 있음	7	17
납부경험 없음	34	83
계	41	100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7%(7/41)의 응답자는 납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3%(34/41)의 응답자는 납부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농업인은 스스로 재배한 작물의 판매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 중 29%는 작물재배로 인한 농업소득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17%의 농업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었다(〈표 12〉 참조).

〈표 13〉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려운 점	응답자 수 (복수응답)	응답자 41명에 대한 비율(%)	전체 응답에 대한 비율(%)
세무신고의 어려움	25	61	37
재배작물의 소득세 비과세 증명	20	49	30
소득세 부담	6	15	9
본인 및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부담	8	20	12
기타	8	20	12
계	67	165	100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는 질문에는 41명의 응답자 중 25명(61%)이 “세무신고의 어려움”에 답을 하였으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재배작물의 소득세 비과세를 증명하는 것”에 49%(20/41)의 응답자가 답을 하였다. “소득세 부담”과 “본인 및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부담”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15%와 20%에 불과하였다(<표 13> 참조).

기타의 응답으로 “세무당국의 자세한 설명이 없어 어려웠다.”, “세무관리에 대해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 “바쁜 일정에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 힘들었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14>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	1순위 응답자수	1순위 응답 비율(%)	1+2순위 응답자수	1+2순위 응답 비율(%)
지방세 담당 관청인 시·군에서 사업자등록	10	24	17	25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9	22	18	27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	4	10	9	13
회원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15	37	20	29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3	7	4	6
계	41	100	68	100

* 12명은 1순위만 응답하였음.

“현재의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를 개선한다면, 다음 중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회원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농협에서 관련 납세협력의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방안에 대하여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37%(15/41)로 가장 높았다. “농업소득세가 지방세 과세대상이므로 담당 과세관청인 시·군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안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24%(10/41)로 두 번째 많았으며, “작물재배로 인한 농업소득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국세의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농업인은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이 22%(9/41)로 세번째로 많았다.

“실질적인 세부담의 변동 없이 농업소득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여, 세무서에서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에는 10%(4/41) 응답자만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현재와 같이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방안은 7%(3/41)만 1순위로 응답하였다(<표 14> 참조).

따라서 응답자들은 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지방세 과세관청인 시·군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과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그 다음으로 선호하였다.

사업자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세무신고가 간편했으면 좋겠다.”, “농장 사업자등록을 동이나 면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실제 농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시에는 행위에 관계없이 세무신고 면제 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의 응답 분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8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편한 점	응답자 수 (복수응답)	응답자 81명에 대한 비율(%)	전체 응답에 대한 비율(%)
소비자 직거래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못하는 점	45	56	43
사업자와 거래시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점	31	38	29
외국인 사업연수생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	12	15	12
기타	16	20	16
계	104	129	10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81명의 응답자 중 45명(56%)이 “소비자 직거래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못하는 점”을 선택하였다. “사업자와 거래시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점”을 38%(31/81)의 응답자가 선택하였으며, “외국인 사업연수생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선택한 응답자는 15%(12/81)에 불과하였다.

<표 16>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불편한 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불편한 점	응답자 수 (복수응답)	응답자 81명에 대한 비율(%)	전체 응답에 대한 비율(%)
세무신고 및 추가적인 세무부담	52	64	38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40	49	29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 증가	34	42	24
기타	12	15	9
계	138	170	100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4%(52/81)가 “세무서에 세무신고 및 추가적인 세무부담”을 선택하였으며, 49%(40/81)의 응답자는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에 따른 부담”을 선택하였다. 42%(34/81)의 응답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 증가”를 선택하였다(<표 16> 참조).

기타의 의견으로는 “일정치 못한 신고소득을 인정해줄지 여부에 대한 걱정”, “각종 신고사항이 많음”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7> 세부담 없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등록을 강제하는 방안

사업자등록을 강제하는 방안	응답자 수	비율(%)
찬성	41	51
반대	40	49
계	81	100

“실질적인 세부담의 변동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51%(41/81)의 응답자가 찬성하였고, 49%(40/81)의 응답자가 반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였다(<표 17> 참조).

<표 18>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

농업인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한 의견	1순위 응답자수	1순위 응답 비율(%)	1+2순위 응답자수	1+2순위 응답 비율(%)
지방세 담당 관청인 시·군에서 사업자등록	19	24	36	25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11	14	30	21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	4	5	15	11
회원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39	50	52	37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5	7	9	6
계	78	100	142	100

* 3명은 무응답이며, 14명은 1순위만 응답하였음.

“현재의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를 개선한다면, 다음 중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원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농협에서 관련 납세협력의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50%(39/78)이었다.

“농업소득세가 지방세 과세대상이므로 담당 과세관청인 시·군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제

도를 개선한다.”는 방안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는 24%(19/78)였으며, “작물재배로 인한 농업소득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국세의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농업인은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선택한 응답자는 14%(11/78)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세부담의 변동없이 농업소득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하여, 세무서에서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5%의 응답자만 1순위로 선택하였고, “현재와 같이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방안은 7%의 응답자만 1순위로 선택하였다(<표 18> 참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아니한 응답자들도 사업자등록을 이미 한 응답자들과 마찬가지로 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지방세 과세관청인 시·군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과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그 다음으로 선호하였다.

“사업자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라는 요구사항에 “농민들의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게 등록과 신고 절차를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등록에 따른 간편한 절차와 농업인 담당자 도우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자등록으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세부담 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정규모이하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유통이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작물재배 농업인의 유통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방안으로 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하는 방안, ③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 ④ 국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 ⑤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농민이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은 현행의 과세제도 틀에서 세법개정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농업인이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과세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자로 취급되어 농업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있어 사업자로 부과되고, 농업인 지원 혜택이 배제되어 다시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하는 방안의 장점은 농업인의 사업자등록 문제와 계산서 발행 문제를 현행의 과세체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원칙에 따라 과세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방안의 단점은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발행·관리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받고 계산서 발행을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지방세법에 의해 발행된 계산서를 국세에서 인정하는 문제와 계산서의 상호검증을 위한 자료 교환 등을 위

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여기에 발생할 상당한 비용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의 장점은 농업인을 도·소매업자로 대우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농업인 대우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제도의 일원화를 피할 수 있고, 최소한의 세법개정으로 실질에 맞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국세의 주무관청인 재경부와 국세청이 국세부와 관련 없는 인력과 장비 등 행정력 낭비, 허위 계산서,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 농업 관련인의 위장 등록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국세 전환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국세로 일원화 된다는 점, 과세체계가 일치하게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관리가 세무서로 일원화 된다는 점, 비록 단기적으로는 비과세를 유지하여 세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국세청과 재경부의 반대가 완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국세로 통합될 경우 비과세 등 감면을 유지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섯째, 농협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협이 사후관리 하는 방안의 장점은 농업인의 편리성이다. 반면에 단점은 농협에 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계산서 발행 관리를 세무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 하게 되므로 계산서 발행 관리가 느슨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농가등록제의 농업인 사업자등록 대체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등록제를 통하여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농가등록증·농가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을 개설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어 사이버몰의 개설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비자 직판에 관심이 있는 122명의 농업인에 대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등록의 주된 동기는 소비자 직거래시 신용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과 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함이다. 둘째, 사업자등록 방안은 농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였다. 셋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세무신고의 어려움을 들었다. 넷째,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과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연구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받고 계산서 발행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국세가 아닌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관리할 명분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국세로 일원화하고 과세체계가 일치하게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 관리를 세무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농업인의 찬성의견은 적지만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할 때는 일정 수준의 매출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

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농업소득세의 국세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운 경우 단기적으로는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농협을 통한 사업자등록 방안이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수석 · 김태곤 · 강혜정. 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태용. 2004. 「농업법인 및 기업농의 활성화를 위한 세무 및 제도 개선안」. 미발표자료.
- 농민신문. 2006.3.22.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의 기본바탕 ‘농가등록제’”.
- 농민신문. 2006.1.27. “농림부 도입결정 ‘농가등록제’ 세금추징 등 등록정보 악용 우려”.
-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단. 2004. 「농업인 전용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
- 서희열 · 정규언. 2005. 농업분야 조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연구용역보고서.
- 서희열 · 정규언. 2006a. “농업법인 육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7권 1호.
- 서희열 · 정규언. 2006b.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 · 판매 관련 조세제도 개선방안”.
- 경상논집.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 오내원 외, 2006,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재경부 소득세과. 2006.5.9.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관련 검토」.
- KOTRA. 2004.6.2. “中, 농산물에도 상표등록 바람”. global window. www.globalwindow.org.

Introducing Farmers' Tax Registration in Korea

Hi-Youl Suh* · Taeyong Kim** · Kyu Eon Jung***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best plan for implementing farmers' tax registration, which helps farmers' direct sales.

We analyze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following five possible tax registration plans for farmers : ① registering as wholesalers or retailers, ② registering at the local government, ③ registering at the national tax offices as cultivating crop business, ④ registering by changing the farm income tax into a national tax, ⑤ registering through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We propose following suggestions for farmers' tax registration. First, in the long run, the registering plan which changes the farm income tax into a national tax is the best way,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may not actually be able to control farmers' tax registration and invoices system. Second, if the farm income tax is changed into a national tax, a specific sum of sales on crops should be exempted from taxation. Third, in the short run, the registering plan through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is most effective and feasible.

<Key words> farmers' tax registration, farm registration, farm income tax, cultivating crop business, recognizable regular invoices

* Professor, Kangnam University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Mirae Accounting Corporation

*** Professor, Korea University